

서울특별시마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0월 11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0월 25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윤재한

가. 제안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2013년 지적·토지업무 운영지침」 및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,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중 특정기관의 직원을 규정한 '한국 감정원 직원'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호).
- (2)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함(안 제3조의2 신설).
- (3) 위원의 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보완함(안 제4조의3).
- (4)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(안 제5조제1항).
- (5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검토보고

본 개정 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2013년도 지적·토지업무 운영지침」에 의거 「서울특별시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」를 정비함으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며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기관을 규정한 「한국 감정원 직원」을 삭제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고,

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안 제4조의3에서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고,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 및 보완하였고,

안 제5조제1항에서는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,

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